



## □ 논의사항

### ○ 2024. 분과구성 논의

- 2월 각 분과별 분과회의 결과 기존의 분과로 구성하자는 의견(단, 한 번의 분과이동은 가능)

### ○ 참여예산 사업 실행 논의

- 기존 사업으로 진행하자는 의견
- 주빌리오케스트라, 맛있고 정이 넘치는 반찬꾸러미, 은평대학, 통학로 바닥등 설치 사업은 전체 사업으로 진행
- 탄소중립프로젝트 다섯 가지 사업은 각 분과별로 하나씩 맡아 실행

| 분과<br>실행사업   | 자치회관운영   | 동보물찾기     | 맛있는베토벤    | 소통과나눔        | 꿈꾸는미래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주사업          | 실버모델콘테스트 | 아가야 넌 소중한 | 갈현2동주민합창단 | 우리동네<br>운동클럽 | 아빠와 함께<br>떠나는 꿈놀이터 |
| 탄소중립<br>프로젝트 | 반려나무키우기  | 플로깅프로젝트   | 커피박이재활용   | 에너지 플리마켓     | 예코클리닝              |

## □ 기타사항

### ○ 주민자치회 위원 정치적 중립의무 관련사항

#### -공무수행사

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한다.

-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(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적용대상: 공무수행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제5조~제9조까지(부정청탁금지,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)적용

-공직선거법 제9조(공무원의 중립의무 등)에 공무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(기관 단체 포함)/ 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)

####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

**제13조(위원의 해촉)**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1. 위원이 제8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
2.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
3. **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,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**

4. 위원 스스로 사퇴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
2.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각종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다하지 않은 경우

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, 주민자치회는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.

## 사진기록

